



보도시점 2023. 11. 22.(수) 15:00 배포 2023. 11. 22.(수) 10:00  
브리핑 시작시

## 마약범죄 빈발지역서 입국하는 사람 전수조사키로..

### 마약으로부터 국민보호 위해 총력 대응

- 마약으로부터 국민 지켜내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 몸 안에 숨긴 마약 다 찾아내는 ‘非동의 전신스캔’ 확대
- 중독의사 면허취소, 오남용 병·의원에 징벌적 과징금 검토
- 타병원 처방이력 확인 의무화해 ‘뽕뽕이 마약쇼핑’ 차단
- ‘치료보호기관 확충’..중독재활센터 3→17곳으로 늘려

□ 정부는 11월 22일(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브리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통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 참석자 :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과수

□ 이번 대책은 ①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②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③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붙임)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 <국경단계 마약류 밀반입 차단>

□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한다. 또한,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내년에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하고, 우범국發 여행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재개한다. 특히,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실시한다.

\* 개인 동의 없이도 신속히 전신을 검사(개인당 3초)할 수 있는 스캔 장비

□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국제화물에 대해 검사체계를 개선한다. 고위험국發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하여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우범국發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한다.

□ 이를 위해 밀수단속 전담조직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하여 통관·감시, 마약밀수 조사, 첨단장비 지원 등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한다.

##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 마취제·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제도를 개선하고, 사후단속을 강화하여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 예방관리를 철저히 한다.
- 먼저, 예방관리 차원에서 의사가 처방 시 준수해야하는 처방·투약금지 기준을 강화(처방량·횟수제한, 성분추가)하고, 처방 시 환자 투약이력 확인을 의무화한다. 의료인 중독판별을 제도화하여, 중독판정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한다. 목적 외 투약·제공 시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신설을 추진하고, 과징금 전환을 제한하는 한편, 징벌적 과징금 등 부과체계도 개선한다.
- 아울러, 사후단속 차원에서 ‘①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AI 접목)의 자동 탐지·분석으로 오남용 사례 자동 추출 → ②기획·합동점검 → ③수사의뢰·착수 → ④의료인·환자 처벌’ 등 범정부(검·경·식약·복지) 합동대응으로 강력 단속한다.



## <치료·재활 인프라 확대>

- 권역별\*로 마약류 중독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료보호기관을 확충('23, 25개 → '24, 30개소 목표)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성과보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치료보호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여, 중독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중독치료 수가를 개선한다.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충청,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라, 제주 등 9개

- 중독재활센터는 현재 3곳(서울·부산·대전)에서 내년 전국 17개소로 확대 설치 설치한다. 24시간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여, 언제 어디서나 도움이 되는 재활 지원을 추진한다.

※ 24시간 마약류 예방·중독·치료 상담 콜센터 : ☎ 1899-0893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범부처가 마약류 확산에 총력 대응한 결과, 올해 9개월(’23.1~9월)간 마약류 사범 단속은 20,230명, 압수량은 822.7kg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48%, 45%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238억)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거듭 강조드릴다”며, “정부는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총괄>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임현진 (044-200-2379)
		담당자	사무관	고대웅 (044-200-2382)
<공동>	대검찰청 마약과	책임자	과 장	박경섭 (02-3480-2290)
		담당자	사무관	김진학 (02-3480-2292)
<공동>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책임자	과 장	백승언 (02-3150-0141)
		담당자	경 정	이주만 (02-3150-2171)
<공동>	관세청 국제조사과	책임자	과 장	김현석 (042-481-7740)
		담당자	사무관	조흥래 (042-481-7702)
<공동>	해양경찰청 형사과	책임자	과 장	김지한 (032-835-2058)
		담당자	경 감	김기석 (032-835-2161)
<공동>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영주 (043-719-2808)
		담당자	사무관	송현숙 (043-719-2804)
<공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승일 (044-202-3870)
		담당자	사무관	강현진 (044-202-3871)
<공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오상윤 (044-202-2450)
		담당자	사무관	김신호 (044-202-2453)
<공동>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책임자	과 장	송중일 (02-2110-3807)
		담당자	서기관	강신원 (02-2110-3788)
<공동>	법무부 교정본부 마약사범재활팀	책임자	과 장	김진아 (02-2110-3345)
		담당자	사무관	김도균 (02-2110-3508)
<공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희권 (044-203-6877)
		담당자	사무관	김태환 (044-203-6547)
<공동>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책임자	과 장	양제현 (02-2100-8201)
		담당자	사무관	이상원 (02-2100-8205)
<공동>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책임자	과 장	김성벽 (02-2100-6291)
		담당자	사무관	진은미 (02-2100-6292)
<공동>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책임자	과 장	김우석 (02-2110-1560)
		담당자	사무관	손건우 (02-2110-1538)
<공동>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독성학과	책임자	과 장	이재신 (033-902-5410)
		담당자	연구관	조지영 (033-902-5454)

I. 추진전략

**목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마약청정국 복귀**

**전략**

**마약류 범죄의  
강력한 단속·처벌**



**중독 탈출에 필요한  
치료·재활 지원**

**추진  
과제**

**1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 ①여행자 일제검사 재개 등 마약류 밀반입 차단
- ②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 중심으로 불법 집중단속
- ③불법 마약거래·유통 추적망 강화

**2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 ①처방제도 개선 등 환자보호 예방관리
- ②범부처 합동점검 등 사후감시·단속·처벌 강화
- ③의료용 마약류 거버넌스 구축

**3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 ①권역별 치료기관 확대 및 운영지원 등 치료 활성화
- ②전국 중독재활센터 확대 설치 등 재활 기능 강화
- ③예방교육 및 홍보 활성화

## 【 '24년 달라지는 모습 】

구분	주요과제	'23년 추진실적	→ '24년 중점과제
<b>불법 마약류 집중단속</b>	밀반입 차단	인천공항세관 신설 (마약단속 특화)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운영 여행자 검사율 2배 화물 검사체계 개선
	집중수사·단속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및 대응	특수본 중심 집중단속 지속 검·경·해경 수사장비 확충 국과수 첨단감정장비 도입
	유통·거래 추적망 강화	온라인 마약광고 2.6만건 차단	온라인 모니터링 고도화 (데이터수집→자동 차단 요청) 범죄추적시스템 고도화 연구 (CCTV분석, 마약조직 소탕)
<b>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b>	처방제도 개선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신설 (마취제, 최면진정제)	처방금지 조치기준 강화 의료인 중독판별 제도화 환자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의료인 자격정지 행정처분 신설
	사후감독 강화	오남용 데이터 수동 분석 후 점검	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지능화 (AI접목)로 오남용 사례 자동 추출 → ②매월 합동점검 → ③수사착수처벌
	거버넌스 구축	개별 사건별 협력	의료용 마약류 상시협력체계 구축 (식약처, 검·경, 복지부) 의료용 마약류 수사의뢰 기준 마련
<b>치료·재활· 예방 인프라 확충</b>	중독치료 활성화	치료보호기관 4곳 추가 지정 (21→25개)	권역별(9개) 치료기관 확충·지원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충청,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라, 제주 치료보호 건강보험 적용 추진
	재활기능 강화	충청권 중독재활센터 설치 (2→3개)  재활전담 교정시설 시범운영(2개)	전국 17개소로 확대 24시간 상담센터 운영 다양한 재활프로그램 도입  재활전담 교정시설 정식운영(4개) 보호관찰소 내 마약검사실 운영
	교육·홍보 확충	약 50만명 교육	청소년·군인 등 대상으로 전문강사 활용 예방교육 확대 (202만명 목표)

## II. 세부내용

### 1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관계부처: 검·경, 관세청, 해양경, 식약처, 방통위, 국과수]

#### <국경단계 마약류 밀반입 차단>

- 국내 마약류 압수량이 대부분 해외 밀반입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한다. 또한,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내년에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하고, 우범국發 여행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재개한다. 특히,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실시한다.(’23.11~)
  - \* 여행자 밀수 적발(건) : (’21) 86 → (’22) 112 → (’23.9) 129 [전년 대비 77%↑]
  - \*\* 개인 동의 없이도 신속히 전신을 검사(개인당 3초)할 수 있는 스캔 장비
-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국제화물에 대해 검사체계를 개선한다. 고위험국發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하여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우범국發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한다.(’23.11~)
- 이를 위해 밀수단속 전담조직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하여 통관·감시, 마약밀수 조사, 첨단장비 지원 등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한다.



## 〈마약범죄 집중수사·단속〉

-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마약수사 실무 협의체의 정기·수시 협력 등 수사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사실상 1년 365일 상시 집중단속체제로 총력 대응한다. 또한, 범죄수익추적팀 협력 등을 통해 범죄수익을 특정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 전세계 마약 유입국에 대한 마약류 밀수사건 및 국제 밀수조직 등 마약류 범죄정보에 관한 마약DB를 구축하여, 밀반입 등 수사에 적극 활용한다.(’24.11)
-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범죄 검찰 사건처리기준 강화\*」를 시행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안건 상정되어 있는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24.상, 심의·확정)에 대해 처벌 신설·강화 등 범부처 의견\*\*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 \* 마약류 밀수·매매 등 공급사범은 초범부터 구속수사 원칙(영리목적·상습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 구형), 미성년자에 대한 영리 목적 마약류 공급사범은 법정 최고형 구형, 초범인 단순투약·소지사범도 원칙적 구공판 등
  - \*\* 청소년 대상 범죄 양형 신설, 처벌기준 강화(상습투약자 최고 징역 6년 이상, 대량범 최고 무기징역) 등 의견 개진 추진(법무부 중심)

## 〈불법 마약거래·유통 추적망 강화〉

- 극미량의 마약류도 감정가능한 고해상도·초고감도 질량분석기를 도입하고, 온라인 모니터링 고도화(e로봇, e-drug monitor)를 통해 마약류 불법 거래·광고에 대해 신속하게 사이트를 적발·차단한다.
- CCTV를 통해 마약사범의 경로를 추적하거나 마약 범죄정보 간 연관성 분석을 통해 조직범죄를 예측·추적하는 범죄추적시스템을 개발·고도화한다. 또한, 마약범죄에 이용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시도경찰청 등에 마약·사이버수사관 등이 참여하는 ‘가상자산 TF팀」을 운영한다.(’23.10~)

-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인 마취제, 수면제 등은 상대적으로 의료인이나 환자가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낮을 수 있으나 오남용으로 인해 중독에 이를 수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전반의 보완이 시급하다.

### 〈처방제도 개선 등 환자보호 예방관리〉

- 마약류에 중독된 의료인이 자신 또는 환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도록 의료인 중독판별을 제도화한다. 중독판정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며, 재교부 심의기준을 강화하고, 재교부 시 교육프로그램 이수 의무를 부여한다.(’24.6)
- 사회적 이슈가 있는 성분(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에 대해서는 처방량과 횟수 제한, 성분 추가 등 처방금지 조치기준을 강화한다. 환자 본인여부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여 사망자·타인 등의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병원 현장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 \* 의료기관·약국 접수·처방(조제) 시 ‘수진자 자격조회’ 확인(국민건강보험법, ’24.5.20시행)
- 환자가 타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은 이력을 의사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환자의 ‘뽕뽕이 마약쇼핑’을 차단하고, 적정 처방을 지원한다.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부터 적용(’24.6~)하여, 향후 프로포폴, 졸피뎀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또한, 그간 의사를 대상으로만 오남용 처방 의심 대상임을 알려왔으나 대상범위에 환자도 추가하고, 경고횟수도 연 2회에서 연 6회(2달에 1번)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 (사전알리미 제도) 오남용 의심 의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경고 제도로, 지속 위반 시 처방금지명령·처분 등 후속조치

### 〈사후감시·단속·처벌 강화〉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 처방·투약내역을 수동으로 분석하여 오남용 사례를 추출했으나, 앞으로 AI 지능화를 통해 자동 탐지·분석, 위반사례 추출을 추진한다.

- 시스템과 각종 공공정보\*를 연계하고, AI알고리즘 학습 등을 통해 명백한 오남용 기준 위반이 아니더라도 처방·투약내역을 스스로 탐지·분석하여 의심사례를 자동 추출하고, 정밀분석을 실시한다.

\* ① 의료인 행정처분, ②대진(휴진·출국)신고, ③처방·요양급여(복지부), ④출입국내역(법무부), ⑤투약사범 정보(검·경)



- 의심사례 등은 식약처 중심으로 검·경, 복지, 지자체 등이 함께 매월 범부처 기획·합동점검을 진행한다. 오남용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수사 의뢰·착수한다. 특히, 특별사법경찰(식약처) 직무 범위를 마약류 취급자(대마채배자 제외)까지 확대하고, ‘의료용 마약류 수사전담반(가칭)’ 운영하여, 점검·단속 역량을 강화한다.
- 수사 결과에 따라 오남용 의료인·환자는 강력히 처벌하는 한편, 목적 외 투약 제공 → 자격정지 12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 자격정지 2월 등 의료인 행정처분을 새로이 신설(「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한다. 오남용에 따른 행정처분(업무정지 등)은 과징금 전환을 제한하고,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과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추진한다.

### <의료용 마약류 거버넌스 구축>

- 향후 수사의뢰에서부터 행정처분·사후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의료용 마약류 관계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상시협력체계를 구성한다.(’23.11~) 또한, 수사의뢰 대비 기소를 제고 및 일관된 기준의 수사의뢰를 위해 의료용 마약류 수사의뢰 기준도 마련한다.(’24.5, 식약경찰)

- 마약범죄 재범률은 36%에 달해 타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1.5배에 달하고, 특히 30대 이하가 전체 마약사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독자들이 다시 범죄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치료·재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 〈치료보호기관 확충 및 활성화〉

- 권역별\* 마약류 중독치료 역할 강화를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확충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성과보상, 필요시 환경개선 등 지원을 추진한다.(‘24.1)
  -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충청,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라, 제주 등 9개
- 치료보호 대상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더 많은 중독자에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고, 치료보호기관에 진료비를 적시 지급하고, 타 정신질환에 비해 치료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마약류 중독치료 수가 개선까지 추진한다.(‘24.6)

### 〈중독재활 기능 강화〉

- 중독재활센터는 현재 3개(서울·부산·대전)에서 내년 전국 17개소로 확대 설치한다. 24시간 상담 콜센터를 운영(‘24.3~)하여, 언제 어디서나 도움이 되는 재활 지원을 추진한다.
- 마약사범 재활전담 교정시설로 화성직업훈련교도소와 부산교도소를 정식 지정·운영(‘24.1)하고, 24년 상반기 중 4대 권역(서울, 대구, 대전, 광주)으로 추가 확대한다. 아울러, 마약사범의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인 ‘통합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청소년 대상 치유프로그램 운영도 확대 추진한다.

### 〈예방교육 및 홍보 활성화〉

- 청소년, 군인 등 대상 예방교육에 전문강사 활용을 약 4배(‘23, 50만명 → ‘24, 202만명 목표) 확대하여 마약류 예방교육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24.1~)
  - \* 초·중·고 학교에서 의무교육(523만명) 실시 중(교원 또는 전문강사 활용)